

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
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
나.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
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을 개정함(안 제4조)
○ 110만원 이상 → 1천만원 이상
나. 그 밖에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없음.
다. 기 타 : 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”를 “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3조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회계관계 공무원”을 “회계관계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재정보증기간”을 “재정보증 기간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재정보증한도액)”을 “(재정보증 한도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110만원 이상”을 “1천만원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재정보증한도액”을

“재정보증 한도액”으로, “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”을 “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”을 “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때에는 곧”을 “때에는 지체 없이”

로, “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”을 “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를 보관 관리한다”를 “보관·관리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	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</u> <u>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</u> <u>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</u> <u>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재</u> <u>정법</u> 」 제95조에 따라 <u>회계관계</u> <u>공무원</u> ----- -----.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<u>이 조례</u> <u>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</u>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</u> <u>말한다.</u>	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<u>이 조례</u> <u>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사람을 말한다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에 <u>게재된 자 이외의</u> <u>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</u> <u>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</u> <u>자</u>	2. 제1호에 <u>열거된 사람 이외의</u> <u>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미시</u> <u>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</u> <u>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</u>
제3조(재정보증) ① · ② (생 략)	제3조(재정보증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에 <u>의한</u> 재정보증은 시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, <u>회계</u> <u>관계 공무원을</u>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 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이루어진다.	③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회계</u> <u>관계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	④ -----

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다만,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
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
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 할
수 있다.

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제2조의
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
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
상으로 한다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
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
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
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
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
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대
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회
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
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
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
다.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
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
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
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
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

-. -----
----- 재정
보증 기간-----
-----.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에
따른 -----
----- 1천만원 이상----
-----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
제2조에 따른 -----

----- 재정
보증 한도액-----
-----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
-----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-----

----- 해당연도 세
출예산에서 -----.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
----- 「지
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른 ----
----- 그 밖에 --

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

때에는 지체 없이 -----
----- 해당 보험
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
하여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해당

-----.

③ ----- 제2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-----

----- 그 밖에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보관
· 관리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.

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.

[전문개정 2011.8.4]

제9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]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138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<개정 2007.4.5>